

■ 주주제안 관련 법령

법 령	주 요 내 용
<p>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</p>	<p>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 (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. 이하 이조에서 같다) 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 (이하 '株主提案'이라 한다) 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③ 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,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.</p>
<p>상법 제542조의6 소수주주권 (상장회사 특례)</p>	<p>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조 (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</p> <p>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 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)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 (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</p> <p>③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)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5조 (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</p> <p>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)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66조 (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</p> <p>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 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)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2조 (제408조의9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</p> <p>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 (제324조, 제408조의9, 제415조, 제424조의2,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</p> <p>⑦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의2 (제324조, 제408조의9, 제415조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</p> <p>⑧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.</p> <p>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2조의7제2항에서 “주식을 보유한 자”란 주식을 소유한 자,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,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⑩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542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</p>